

##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

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원 등이 추진 중인 「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제1항 및 「광명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. 5. 13.

**광명시의회의장**

1. 제·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: 조례안 1건 개별내용 참조

2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16년 5월 19일(목) 18시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 · 우편 · 인터넷 · 팩스

▣ 보내는 곳 :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(우 14234)

▣ 전화번호 : 02) 2680-2525, 팩스번호 : 02) 2680-2637

▣ 전자우편 : chaos96@korea.kr

다. 기재내용 : 성명(단체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 · 의견

라. 제출기관 : 광명시의회사무국(의사팀)

마. 문의전화 : 02) 2680-2525

# 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구 분 : 일부개정

2. 개정이유

- “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”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수를 확대·조정하고, 공동대표 위촉절차를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수 확대·조정(10명 이내 → 20명 이내) 【안 제3조제3항】
- 공동대표 위촉절차 결정(“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” 신설) 【안 제3조제4항】
- 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 수 확대·조정(20명 이내 → 40명 이내) 【안 제8조제2항】

4. 개정조례안 : 불 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 임

6. 입법예고 : 의원발의(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)

7.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8. 참고사항 : 불 임(관계법령 발췌서)

# 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 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명·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10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20명”을 “40명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발 의	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(외 2인)
소 관	융복합도시정책과
입 안	이병주 의원 (02-2680-2503)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구성 등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대책위원회에는 상임대표를 포함하여 <b>10명</b> 이내의 공동대표와 약간 명의 고문을 들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8조(집행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집행위원회는 <b>20명</b>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은 상임대표가 지명하고,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        --- <b>20명</b> -----          -----</p> <p>④ <u>공동대표는 상임대표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제8조(집행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b>40명</b>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         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# 관 계 법 령 발 취 서

관 계 법 령	내 용
□ 지방자치법	<p>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 가. <u>지역개발사업</u></p>